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68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김용민・이기헌・이성윤

장경태 • 박지원 • 박균택

서영교 · 전현희 · 한준호

이건태 • 문정복 • 전재수

주철현 • 문진석 • 민형배

김 현 의원(16인)

찬 성 자 : 김동아 의원(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 정치적 특성상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도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사실상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의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함.

이에,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3조의3(수사기관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공직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한 것으로 본다.

- 1.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 2. 제197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검찰청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청법」 제47조제2항제1호의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 제6조의2부터 제10조의 사법경찰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관
- ②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소시효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의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 자의 재직 중에 정지한다.

2.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자의 퇴직일로부터 진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로서 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53조의3(수사기관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① 수사와 기소
	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공
	직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한 것으로 본다.
	1.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u>검사, 군검사</u>
	2. 제197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검찰청법」 제47조제1항제1
	호의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
	보, 「검찰청법」 제47조제2
	항제1호의 5급 상당부터 7급
	<u>상당까지의 공무원, 「사법경</u>
	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 제6조의2부
	터 제10조의 사법경찰관,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②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
	의 공소시효는 정지한 것으로

<u>본다.</u>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소시효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의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호는 공직자의 재직 중에 정지한다.
- 2.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의 재
 직 중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
 는 공직자의 퇴직일로부터 진
 행한다.